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27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92호)	송언석의원	2024. 6.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42호)	신성범의원	2024. 6. 1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580호)	신성범의원	2024. 6.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600호)	윤상현의원	2024. 6.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611호)	김종양의원	2024. 6.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643호)	신성범의원	2024. 6.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701호)	박정하의원	2024. 6. 2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873호)	권영진의원	2024. 6. 2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38호)	정희용의원	2024. 6.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61호)	정희용의원	2024. 6.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 회의(2024.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46호)	문진석의원	2024. 6. 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94호)	김선교의원	2024. 6. 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221호)	이병진의원	2024. 7.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06호)	서영교의원	2024. 7. 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33호)	서영교의원	2024. 7. 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80호)	서영교의원	2024. 7. 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82호)	김선교의원	2024. 7. 4.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438호)	서영교의원	2024. 7.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439호)	한병도의원	2024. 7.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455호)	서영교의원	2024. 7. 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47호)	서영교의원	2024. 7. 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75호)	서영교의원	2024. 7. 1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624호)	서영교의원	2024. 7.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738호)	서영교의원	2024. 7. 1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778호)	서영교의원	2024. 7. 1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931호)	조인철의원	2024. 7.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027호)	김선교의원	2024. 7. 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325호)	조승환의원	2024. 7. 2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08호)	복기왕의원	2024. 7. 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72호)	서천호의원	2024. 8. 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735호)	김민전의원	2024. 8. 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13호)	위성곤의원	2024. 8. 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63호)	정성국의원	2024. 8. 1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081호)	윤준병의원	2024. 8. 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46호)	윤준병의원	2024. 8.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59호)	임미애의원	2024. 8.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204호)	윤준병의원	2024. 8.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211호)	박용갑의원	2024. 8.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225호)	윤준병의원	2024. 8.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283호)	고동진의원	2024. 8. 28.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402호)	배준영의원	2024. 8. 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655호)	한병도의원	2024. 9. 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674호)	한병도의원	2024. 9.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33호)	한병도의원	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784호)	한병도의원	2024. 9. 9.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160호)	황정아의원	2024. 9.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266호)	모경종의원	2024. 9.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01호)	김형동의원	2024. 10. 2.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56호)	김형동의원	2024. 10.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584호)	김형동의원	2024. 10.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 회의(20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735호)	한병도의원	2024. 10. 16.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837호)	김형동의원	2024. 10. 23.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907호)	강대식의원	2024. 10. 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141호)	정부	2024. 10. 3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 회의(20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358호)	윤건영의원	2024. 11.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 회의(20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495호)	위성곤· 배준영의원	2024. 11.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 회의(2024.11.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34호)	김예지의원	2024. 11. 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49호)	윤재옥의원	2024. 11. 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06호)	김윤의원	2024. 11. 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10호)	윤재옥의원	2024. 11. 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32호)	박용갑의원	2024. 11. 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25636호)	박정현의원	2024. 11. 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699호)	김승수의원	2024. 11. 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739호)	안호영의원	2024. 11. 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768호)	안호영의원	2024. 11. 2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876호)	한정애의원	2024. 11. 2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4. 12. 16.)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는 위 6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

런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대의견

- 가.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 등과 협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주민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나.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민주택의 기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신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1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검 토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라. 행정안전부는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마. 행정안전부는 2025년 5월 중 사업시행자가 담보신탁 등을 통해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 현황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제1항, 제22조의 2제2항 신설, 제31조제8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1조, 제43조 제3항, 제44조제1항·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2항)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 4)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 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 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 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 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원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0조제2 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 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 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4조의2제3 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 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 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을 "공제"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자녀 양육자"를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다만,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 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다)
-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 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 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 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 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 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

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 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 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

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 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또는 오피스텔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 · 증여하는 경우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이 말소되는 경우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

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31조의5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 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 1일까지 경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25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

우로 한정한다)"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당시가액"을 "취득당시가액"이라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 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 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의 100분의50(감염병전문병원의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 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 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 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 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 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 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 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 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 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 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제5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해당 법인"을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6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 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 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정한다.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 우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도"를 각각 "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 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이 항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 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으로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

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제18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같은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

- •제3항, 제77조제2항 •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31조의3제
 1항·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 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 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 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추징에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추 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 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 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 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 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12월 31일-----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 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 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 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 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

1
특별자치도(관
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 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 4. (생 략)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 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 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하다.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 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 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 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2	_	1	(처	행고	L	フト	0	١
<u>٥</u> .	• 4	4. ((역	앵끄	ł	4r`	Ť.)

줴	10	조((농	어	업인]	등	에	대	한	융	-자
	관	련	감	면	등) (1	(현] 행	과	같.	음)
	2	_				- —						
			20	027	7년	1	2월	<u>]</u> 3	1일	<u> </u>		

- 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 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 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

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 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 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 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 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 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1.</u>		
∥16조(농어촌 주	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7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u>202</u> 7년 12
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4. (생략)
- ②·③ (생 략)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1. · 2. (생략)
 -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u>한센인</u> <u>정착농원</u>의 대표자나 한센인 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2027
<u>2027년</u>
<u>12월 31일</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u>한센인정착마</u>
<u> </u>
<u>202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3
<u>한센인</u>
<u>정착마을</u>
②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 세법 |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 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4조제3항에 따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한센인정칙	마을
		<u>2027년 12</u>
월 31일		

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 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 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 ②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다.
- 1. 2. (생략)
- ③ (생략)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면) (생략)

<신<u>설></u>

- -- 2027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 증축 또는 대수선 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 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 동산을 매각 · 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자 면) ①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 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 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저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8
1
<u>2027년 12월 31일</u>
2
<u>2027년 12월 31일</u>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u>18세 미만의 자</u>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 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 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 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 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 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 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 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 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 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 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 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 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 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 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 월 31일까지 ---------- 공제----.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제3항제3호

1. ~ 4. (생 략)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 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 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 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 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 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 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 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 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 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 3.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③</u>
<u>2027년 12월 31일</u>
<u>제1항</u>
또는 제2항의
<u>.</u>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u>제1항 본문 또</u>
<u>는 제2항 본문</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7 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 규정</u>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면)
<u>2027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9007

- 70
<u>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
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
한다.
1.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취득

-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 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 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2. 삭 제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저 면) ① ~ ③ (생 략)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u>년 12월 31일</u>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1. 2027년 12월 31일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 이라 한다)이 보철용 ·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 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 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2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 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

2027년 12월 31일

급 1	급부터	7급까기	지의	판정	을
받은	사람의	경우여	세는	취득	세
및 지	ト동차세.	의 100분	분의 5	50을	각
각 7	경감)한디	구. 다면	<u>ŀ</u> , 제	17조	에
따른	장애인	용 자동	동차여] 대	한
감면	을 받은	경우는	제오	한다	} .
1 .	4 (x1)	라			

- 1. ~ 4. (생략)
- ⑤ (생략)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 감한다.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2. 삭 제
 -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2027년 12월 31일</u>
1. <u>2027 € 12 € 01 €</u>
(3)
③

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
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
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

<u>2027</u>
<u>년 12월 31일</u>
<u>년 12월 31일</u>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 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

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 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 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 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 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 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 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 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 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 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 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 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 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 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 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 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 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 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 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 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 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 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 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 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 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 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 우
-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 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 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 함한다)
-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 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 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 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 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 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 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 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 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 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한다.
-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 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

- <u>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u> 경우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
 상 취득하는 경우
 -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 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 지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 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 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 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 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 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 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 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 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 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 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 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 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 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 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 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 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

- 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 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 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 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 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

-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 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 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 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공<u>공주택 특별법」 제50</u> 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 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 인 토지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 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 대형기숙사
 -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 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 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 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를 경감한다.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 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 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을 매각 · 증여하는 경우 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 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 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u>함한다)의 100분의</u> 50을 경감 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 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 다)를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 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 인 토지
 -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 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 다)
-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 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 이 말소된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

 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 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 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 하는 경우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 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 축물을 포함한다.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 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 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 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 축물을 포함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 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 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 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 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 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 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_ 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 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 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 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 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 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 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_|(법률 제1748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 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

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 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 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 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 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 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 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 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 는 시장 •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 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

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 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 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 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 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 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 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 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 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 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 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

- <u>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u> 31일까지 감면한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 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
 - 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

 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이 말소된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

-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
 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 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 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 분까지를 포함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u>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u> 경우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 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
 상 취득하는 경우
 -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 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 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 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 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

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추장한다.
-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각·증여하는 경우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 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 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 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 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 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 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 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 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 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 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

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 제한다.
 -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 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 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 피스텔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u>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u> 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

<u>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u> 건축 중인 토지

<u>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u> <u>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u>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 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 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

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 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 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 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 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 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 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 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 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u>주택을</u>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u>주택 등</u>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u>100분의 10을 2024</u> <u>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 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

(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
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
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u>
<u> 감한다.</u>
②
<u>주택등을</u>
<u>주택등</u>
<u>100분의 15를 2027</u>
<u>년 12월 31일까지</u>
③
<u>.</u>
1

<u>택 등</u>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 우

-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u>주택 등</u>을 6개월 이내에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 니한 경우
-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 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③ (생 략)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 7 면) ① (생 략)
 -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 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 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

<u>택능</u>
2
<u> 주택등</u>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
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드) ①
<u>2027년</u>
<u>12월 31일</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2

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③ (생략)

<신 설>

<u>2027년 12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 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 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 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

<신 설>

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임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취득세를 추정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 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 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 호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연금보 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 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 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 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 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세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1

(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 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 를 경감한다.

-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 세의 <u>100분의 75를</u> 경감한 다.
 -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225</u>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된 <u>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u>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4</u> 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2. (생략)
- ③ (생 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100분의 50</u>
을
2
가
<u>100분의 50을</u>
나
<u>150</u>
<u>만원</u>
②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등기
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
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
<u>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 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 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 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 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u>2027년 12월 31일</u>
·.
1. • 2.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
원을 위한 감면)
<u>2027년</u> 12월
 31일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u>취득당시가액</u> 이 12억원 이
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
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
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
1 િગોમી પ્રોમા ગો11૨ ગો1૬ેન્ગો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

 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취득당시가액(이하 이 조
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
<u> </u>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 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 한다.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 파트는 제외한다)
-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 형 생활주택
-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 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 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

- 2. <u>산출세액이</u>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u>제1항에</u>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1. (생략)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

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
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
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
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③
·.
1. (현행과 같음)
2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 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u>다</u> 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 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 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 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 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다. (생 략) 3. ~ 5. (생 략) <신 설>

<u>낙</u>
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
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으로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 5. (현행과 같음)
-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

④・⑤ (생략)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 7. (생략)

② 삭 제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에 따라 주성된 경우는 제외
<u>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
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1. ~ 7.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2. 삭 제
- ② (생략)
- ③ 삭 제
-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 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 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 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 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

1. <u>2027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4
<u>취득세의 100분의 30</u>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
<u>00분의 40)을</u>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분</u>
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u><단서 삭제></u>

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 감한다.

⑤ (생략)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삭 제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면)
-	
-	
-	
-	
-	
-	<u>.</u>
	1. <u>2027년 12월 31일</u>
	<u>.</u>
제4	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
	한 감면) ①
-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u>2024년 12월 31일</u>까지 각각 경감한다.

- 1. ~ 3. (생략)
- ② 삭 제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 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 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 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 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

<u>2027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1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 2. 삭 제
- 3. (생략)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기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또 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 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략)
-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u>2027년 12월 31일</u>
3.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2027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아니한다.

2027년 12월 31일
③
2027년 12월 31일

- ④ (생략)
-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한 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한정한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⑥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경감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2025 1 4221
<u>2027년 12월</u>
3101
<u>31일</u>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2. 삭 제
- ⑧ (생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 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 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 도시개발 특별법 | 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 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 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1. <u>2021 ਦੇ 12 ਦੇ 01 ਦੇ</u>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_
①
-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②「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생 략)
 -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u>2027년</u> 12월
31일
4 0 (5) 5) -) -) 0)
1. • 2.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 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 2. (생 략)

④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u>2027년 12</u> 월	<u>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1. (현행과 같음)	
2	- <u>2027년 12</u>
월 31일	

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 나.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 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 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

 가.·나. (현행과 같음) ②
2027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2027년 12월 31일</u>
<u>2027년 12</u>

<u>월 31일</u>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u>월 31일</u>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u>월 31일</u>-----

-----.

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 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 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⑤ (생략)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 전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 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 세를 각각 면제한다.
-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
면) ①			
			- – –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 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신 설>

<u>2027년 12월</u>
31일
②
<u>2027년 12월 31일</u>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u>다.</u>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u>니하는 경우</u>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지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u> </u>
· ②

0.00713 10.01 01.01
<u>2027년 12월 31일</u>

1. · 2. (생략)

③ (생략)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 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등) 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 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 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 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 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 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 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 (생략)
-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 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 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 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 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

 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
 아니하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 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 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 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 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u>2027년 12월 31일</u>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과세특례) ① 2027년 12월 31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각각 <u>2024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③ (생략)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 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 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u>2027년 12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세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
	-
	-
	-
	_
	_
2027년 12월 31	ı
일	_
	ı
세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중성 한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

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 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 추징한다.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 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 (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 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 여 산정한 금액
-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 | ② ------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u>양주받은 사</u>
<u>업용 재산 2027년</u>
12월 31일
<u>2027년</u>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 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한다.

-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 출자한 재산
-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 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 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 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 세를 추징한다.
-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제산. 다만,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u><</u> 삭 제>
2
<u>사업용 재산</u>
<u>.</u>
3
<u>사업용 재산</u>

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삭 제

5. ~ 7. (생략)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 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 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 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u>.</u>
·
5. ~ 7. (현행과 같음)
4
<u>2027년 12월</u>
31일
<u>100분</u>
의 50을
·.
⑤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u>2024년 12월</u> <u>31일까지</u> 면제한다.

- 1. ~ 7. (생략)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 식을 취득한 경우
- ⑥·⑦ (생 략)
-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 ⑨ (생략)
-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u>2027년</u> 12월
31일
1. ~ 7. (현행과 같음)
<u><</u> 삭 제>
⑥·⑦ (현행과 같음)
8
-11-1
<u>해당</u>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 격디는 버이 2027
<u>경되는 법인 2027</u> <u>년 12월 31일</u>
<u>년 12년 51년</u> .
⑨ (현행과 같음)

10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 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 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 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 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 에 대해<u>서는 2024년 12월 31일</u> 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 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6. (생략)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

<u>양수받</u>
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
세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에 대한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 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 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 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 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 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 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 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 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저한 감면) ① ~ ③ (생 략)

-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 3. (생 략)
-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
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세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u> </u>
4
1. ~ 3. (현행과 같음)
4
가.·나. (현행과 같음)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 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 12. (생략)

⑤ ~ ⑨ (생 략)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③ (생 략)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 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5. ~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u>2027년 12월 31일</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u>2027년 12월 31일</u>
<u>2027년 12</u>
월 31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u>운송용</u> 선박과 외국항로에 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 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 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 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 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 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 2. (생략)

②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u>2027년</u>
12월 31일
<u> </u>
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u>선박</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7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 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 방세법 _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 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 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 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7 면) ① ~ ③ (생 략)

0 1 (101 E	<i>コ)</i>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u>2027년 12월</u> 3	<u>31일</u>	
	- 2027	년 12
월 31일		
 제66조(교환자동차 등		한 감
면) ① ~ ③ (현행		
	, = 1	. /

③ • ④ (혀해고 간으)

<신 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생략)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 세특례) ①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
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
<u>제6항</u>
<u>2027년 12월</u>
31일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1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

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정한다.

1. • 2. (생략)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 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 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 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 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

<u>2027년</u>
12월 31일
<u>.</u>
1.・2. (현행과 같음)
②
<u>2027년 12월 31일</u>
<u>.</u>
3

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 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 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 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 정하여 면제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u>2027년 12월 31일</u>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7년 12월 31</u>
<u>일</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략)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 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2. (생략)
- ② 삭 제
- ③ (생략)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u>2027년 12월 31일</u>
2027년 12월 31일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u>2027년 12월</u>
<u>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_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 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ㅣ 제27조에 따른ㅣ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u>2027년 12월 31일</u>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ㅣ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

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 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 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 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 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 다.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세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 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_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 지 아니한 경우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 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

<신 설>

②·③ (생 략)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 저 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 어촌정비법 _ 제56조에 따른 농 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 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 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 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

니한 경우

-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ᅦ	73	조(토	기	수	용		등	0	.로	-	인	한	대
	체	취목	투이	4]	대	힌	-	감	면)	1) –		
							-							
							-							
							- –							
							-							
							- –							
							-							

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 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 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 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 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 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 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 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 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 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 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 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 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 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 나. (생 략)
 - 다. 매수 · 수용 · 철거된 부동 산등이 있는 특별시 · 광역 시・특별자치시・도와 잇 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내의 지 역. 다만, 「소득세법」 제 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 정지역은 제외한다.
- 2. (생략)
- ② ③ (생 략)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1
1
1 가.·나. (현행과 같음)
1 가.·나. (현행과 같음)
1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도·특별</u>
1
1
1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
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
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전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

에 대한 감면) ①
1. (현행과 같음)
2 <u>2027년 12</u>
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 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_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 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 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 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 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 별법 .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5조의3제1항 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 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 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2<u>024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 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 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

<u>2027년 12월 31일</u>

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 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 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 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 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 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 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7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 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제2 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4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 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 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 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 4. (생략) ②·③ (생 략)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 감면) ①·② (생 략)

<u> 2027</u>
년 12월 31일
0005
<u>2027</u>
년 12월 31일
<u>년 12월 31일</u>

<신 설>

<신 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생 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 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 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 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 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 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 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 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 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 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 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 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 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 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 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 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 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 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 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 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 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 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 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 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sim	(5)	(생	략)

⑥·⑦ 삭 제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기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① ~ ⑤ (현행과 같음)	
8	
⑨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 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 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생 략)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저라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2
<u>2027년 12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세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참업(제58조의3제6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 2. (생략)

2027년 12월 31일
<u>.</u>
1.·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③ (현 8기 ᇀ요)]]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신 등에 대한 김단/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u>을 창업하는</u>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 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 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 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 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②・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
<u>2027</u>
<u>년 12월 31일</u>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의 개량에 대한 감면)
l

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ᅟ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 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 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 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 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 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_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

<u>2027년 12월 31</u>
일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신 설>

-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 |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 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 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 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 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 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 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 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u>③</u>
<u>2027년 12월 31</u>
<u>일</u>

- <u>④</u>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

감면) ①
<u>2027년 12</u> 월 31일
②
202713 12 <u>0</u> 2161
<u>2027년 12월 31일</u>
(3)

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 제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이 조에서 "지방공사"라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한다.

- 1. ~ 3. (생략)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 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

	<u> 2</u>	027년	12월
31일			
제85조의2(지방공기	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u>	<u>027년</u>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 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 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 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 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 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구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 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네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생략)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략)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
<u>.</u>	

- 1. (현행과 같음)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 제4항, 제16조, 제17 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 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 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 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 제44조제2항 • 제5항, 제 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 · 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 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 제 3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 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 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u>2024</u> 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 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1. (생략)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 3. ~ 7. (생략)

<u>2027</u>
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20271-1 10
<u>2027년 12</u>
위 21이
<u>월 31일</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